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28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이연희 · 한준호 · 송재봉
김정호 · 박용갑 · 박홍배
손명수 · 안태준 · 서미화
한민수 · 이광희 · 맹성규
김영진 · 염태영 · 이정문
임미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환경오염·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이하 “방미통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이 어떤 기준에서 진행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물의 방미통위 통보 역시 기한과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재난방송등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또한 정확·신속한 재난방송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미통위 내에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방미통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방송 실시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지역 방송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재난방송등에 관한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40조의4·제40조의5 신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통보”를 “제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하고, 모니터링의 결과를 매월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4를 제40조의6으로 하고, 제40조의4 및 제4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재난방송종합상황실 운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방송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5(재난방송등 제작 지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방송등 실시 및 장비 설치·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2. 주관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3.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방송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수어방송 등 제작에 필요한 비용
4. 재난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④ (생략)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에 <u>통보</u>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⑤ ----- ----- ----- ----- ----- ----- <u>제출</u> ----- ----- <u>.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재난방송등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하고, 모니터링의 결과를 매월 서면등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u>
⑥ ~ ⑧ (생략) <u><신설></u>	⑥ ~ ⑧ (현행과 같음) <u>제40조의4(재난방송종합상황실 운영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중</u>

<신 설>

합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방송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종합상황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5(재난방송등 제작 지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방송등 실시 및 장비 설치·운영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u>제40조의4</u> (생략)	<u>2. 주관방송사의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u> <u>3.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수어방송 등 제작에 필요한 비용</u> <u>4. 재난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u> <u>제40조의6</u> (현행 제40조의4와 같음)
---------------------------	--